어촌소멸대응지원(귀어귀촌 촉진)

※ 주요 변경부분 파란색 표시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어촌어항과	과 장 김정화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김상동	044-200-5650 044-200-5662 044-200-5663

① 어촌에서 살아보기(귀어인의 집)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○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,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「귀어인의 집」 조성하여, 일정기간 동안 제공·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

---< 어촌에서 살아보기 >

(사업형태) 자치단체 경상보조 **(기간)** '22년~계속

(지원규모/조건) 귀어인의 집 6개소 300백만원/지특회계(국비 50%, 지방비 50%)

*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

(재원) 지역발전특별회계(3300-3447-300) 어촌소멸대응지원(귀어귀촌 촉진)

(수혜대상자) 귀어귀촌 희망자, 귀어인,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등

2. 근거법령

- o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1조(귀어업인의 육성)
- o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(귀농어업인·귀촌인 정착 지원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	성과지표	2025	최	근 4개	1년 실	적	지표산출	측정방식
		목표치	목표치 21년		23년	24년	시기	7887
	귀어인의 집(개소)	6	-	6	6	6	′25. 12	지자체 사업 결과보고서 취합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
합 계	300	300	300	300	
- 국 비(50%)	150	150	150	150	
- 지방비(50%)	150	150	150	150	

Ⅱ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이하 "사업대상자"라 한다.)
- * 귀어인의 집 구입이나,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*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
- o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
- 사업신청일 현재 귀어귀촌 관련 사업,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국비를 지원 받아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
- 이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, 체험,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자

3. 지원금의 사용용도
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
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
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대상자가 주택(빈집)을 매입·임차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, 이동식 주택구입, 임대운영 등의 비용으로 지원

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ㅇ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50%, 지방비 50%
- *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·도와 시·군·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

5. 주요 사업내용

구 분	주택 리모델링	이동식 주택	임대 운영
조 건	5년 이상 무상제공	공 및 임대차 계약	2년 이상 임대차 계약
지원규모	최대 50백	만원 이내	월 30만원 이내

① 주택 리모델링

- *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
- 개인, 어촌계, 어촌 관련 협의회(이하 "사업장소 제공자"라 한다.)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5년 이상 무상 으로 제공하는 경우
-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고,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*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장소 제공을 위한 별도 신청 없이 자체 진행 가능

② 이동식 주택

- *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
-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
-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,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 하려는 경우
 - *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에 활용할 경우 이동식 주택 조성을 위한 별도 신청 없이 자체 진행 가능
 - * 이동식 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,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주택의 사후 관리·처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지방보조금 관리규정」에 따라 시장·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

③ 임대 운영

- o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'귀어인의 집'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 - * 임차인의 자부담 금액은 사업대상자가 설정

6. 지원내용

- ㅇ 주택 리모델링, 이동식 주택구입, 노후 주택 철거*, 임대 운영 등 비용
- *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귀어인의 집 조성을 위한 철거 비용 지원
- ㅇ 지원단가 :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
- ㅇ 관리기간 : 조성 후 5년간(임대 운영은 2년 이상)

7. 운영방식

- 이 입주대상자: 귀어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
 -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등을 우선순위 부여
- 이용기간 : 최소 1년 이상 이용(주택 리모델링, 이동식 주택)을 원칙으로 하고,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
 - * 사업대상자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설정
- ㅇ 이용비용 : 전기, 수도세, 난방비 등 이용비용은 지자체 자율 결정
 - 귀어인의 집 운영·유지·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귀어인과 마을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
- o 운영·관리 : 사업대상자
 - 사업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운영을 위한 별도 지침(이용기간, 이용비용, 연계 활용방안 등)을 마련하여 운영하며, 지침 마련 시 사업장소 제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가능

8. 사업추진체계

추진절차	시기(안)	추진기관 및 내용
'25년 지침통보 및 홍보	('24. 12월)	○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○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(해수부→사업대상자)
'25년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계획 수립	('24. 12월)	이 배정된 사업량을 고려한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계획 수립(사업대상자) 및 사업 시행자 선정
'25년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	('25. 1월)	 ○ 운영계획* 작성·신청: 사업장소 제공자 → 사업대상자 사업장소에서 숙소·교육장 등 시설현황, 프로그램, 운영 인력 현황 등을 담은 신청서 제출 ○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: 시·군·구에서 요건에 맞는 사업장소 제공자를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 확정 * 전체 운영계획을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'25년 사업장소 제공자 확정	('25. 2월)	O 사업대상자 운영계획(일정·운영규모 등) 확정 * 사업장소 제공자 현황을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'26년 사업 수요조사 및 제출	('25. 4월)	ㅇ 사업시행자별 '25년 사업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
'26년 지침통보 및 홍보	('25. 9월)	○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○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(해수부→사업대상자)
'26년 사업대상자 선정	('25. 12월)	O 배정된 사업량을 고려한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계획 수립(사업대상자) 및 사업 시행자 선정
사업 점검 및 관리	('26. 1월)	사업대상자 주관 사업 점검관리*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활용,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가능
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	('26. 2월)	ㅇ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

- * 선정 절차 등의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차년도 사업인원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* 사업대상자 선정 후 여분의 사업량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시·도별 재배정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

해양수산부

- o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시·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
 - * 사업 부지(이동식 주택) 및 주택(리모델링, 임대운영)확보 여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계하여 어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지역 우선 배정

사업대상자(시·도)

- 시·도는 해양수산부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보를 기초로 세부 선정계획 수립 및 시·군·구 통보
 - * 시·군·구는 자체적으로 귀어인의 집 조성 가능

사업대상자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 신청절차, 자격, 기간, 접수장소 등을 상세 공지
- 당해 연도 귀어인의 집 세부 선정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장소 제공 표명자 중 다음 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【별지 4호 서식】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
 - ①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
 - ② 기타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
 - ③ 귀어귀촌인(예비자 포함)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대상 선정 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 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,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 체결을 확인한 다음 선정

< 선 정 방 식 >

- ㅇ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
- ㅇ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
 - 심사위원회 구성 : 귀농·귀촌 관련 전문가 5~8명으로 구성
 -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, 리모델링 절차 등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 추진

사업장소 제공자

○ 사업장소 제공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【별지 1호 서식】,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【별지 2호 서식】, 빈집 사용승인서 【별지 3호 서식】를 시·군·구에 제출

사업대상자(시·도)

o 시·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(선정완료 시)

2.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사업장소 제공자

- 이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소 제공자는 주택법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어인의 집 수리 착(준)공계【별지 5호 서식】제출 및 개량 추진
- 사업발주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제반 규정에 따름

사업대상자(시·군·구)

-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,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·군·구에서 직접 시행
- o 기존 주택의 내·외부 촬영,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
-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및 추진실적【별지 6호 서식】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 : 익월 5일까지
- o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준공된 시설물(토지 포함)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귀어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

사업대상자(시·도)

○ 시·도지사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및 추진실적【별지 6호 서식】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: 매년 6월 말, 11월 말, 사업 종료 시 기준 익월 10일까지

3. 이행 집행단계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- o 해양수산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
 -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 점검,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

사업대상자(시·도 및 시·군·구)

- o 귀어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소 제공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·유지 하도록 독려하고, 귀어귀촌 정보제공 등을 통해 귀어인의 집 이용자가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 - 또한, 귀어인의 집 조성 완료 예정일을 고려해 입주자를 사전 선정하여 귀어인의 집 미사용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함

사업장소 제공자

ㅇ 귀어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

《예산집행》

사업장소 제공자

○ 사업장소 제공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

사업대상자(시·도 및 시·군·구)

사업대상자는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집행(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)하여야 함

《제재》

 사업대상자(사업장소 제공자 포함)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(사업장소 제공자 포함)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

4. 성과측정단계

- ㅇ 성과측정시기 : 당해연도 1월~12월
- ㅇ 성과측정방법 : 계획대비 추진실적(기본계획, 사업시행 등)
 - 연말 기준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

5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- ㅇ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, 해양수산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
- ㅇ 평가결과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

Ⅳ. 2025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25년 사업수요조사

가. 신청서 제출기관

- ㅇ 사업대상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신청서 제출
- 나. 신청자격 : 시·군·구

2. 2025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- ㅇ 2024년 4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별 배정(9월)
 - *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(안) 배정 시 예비후보 순위도 함께 공지

【별지 1호 서식】

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

	사업장소 제공자			참여	겨지역					
신	성 명 (대표자명)		생년월일			전 화 번 호	()			
청	주 소									
자	공동체 경력 (참여일)	년 ()	참여 유형	마을		사업 규모				
	공동체 형태	법인,	기타	참여가구	Ž	· 구성원	수 명			
	사 업 명									
	사업예정지									
신 청	주변 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									
내	사업내용별 규모									
a o	사 업 비 (천원)	계 -	정부/ 국고계 (%)	지원(지특회 보 조 (%)	례) 융 자 (%)	지방비 (%)	자부담 (%)			
자기	조달시기									
자금	조달방법									
상	기와 같이 나	견도 귀어인	의 집 조성	사업을 신청	합니다.					
	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	ㅇ ㅇ (시?	앙·군수) ㅋ	거하							
첨	부서류 : 1. 귀ㅇ 2. 자녁	러인의 집 운 부담능력을 [→]								

【별지 2호 서식】

「귀어인의 집」운영계획서

1. 사업 주관 협의회

- ㅇ 소재지 :
- ㅇ 협의회 대표자 성명 :
- ㅇ 연락처 :
- ㅇ 주요활동

2. 사업 추진방향

- ㅇ 추진체계 구축
- ㅇ 지역정착 지원
- ㅇ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비(자부담 포함)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			
게구가협정	71 व उ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부담		
귀어인의 집 조성사업								

^{*}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

나. 빈집확보 현황

소유주						면적	(m²)	7.7	건축	
주 소	성명	시군	면	리	지번	대지	건축	구조	방수	년도

^{*}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(전경, 원경, 내부, 주변사진 등)

다. 세부사업별 소요예산

사업명	세부내용	산출근거	금액(원)	비고
이동식 주택				
리모델링				
임대 운영				

4. 귀어인의 집 활용계획

- 가.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
 - ㅇ 지붕 : 지붕교체 여부 등
 - ㅇ 주방과 욕실 :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, 싱크대 교체 여부
 - ㅇ 화장실 :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
 - ㅇ 방 도배, 장판 교체 여부 등
 - ㅇ 귀어인의 집 임대료(30만원 이내/월) 지원 가능
 - *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

나. 활용계획

- ㅇ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
- ㅇ 귀어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
- ㅇ 귀어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
- ㅇ 귀어인의 집 이용자 부재 시 관리계획 등

5. 귀어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

- ㅇ 어촌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
 - 체험실습장 제공, 어업장비 임대 및 알선, 종자, 기자재 제공 여부
 - 어업, 양식업 등 기술 지도
 - 어업, 양식업 등 도우미 지정
 - 마을주민과 화합행사
 -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

<u>빈집 사용승인서</u>

ㅇ 주소 :				
ㅇ 면적 :	m²(대지	m³, 건물	m²)	
ㅇ 사용목적 :				
ㅇ 사용기간 :				
상기 토지 및 사용을 ㅇㅇ면 시에는 임대계약서	ㅇㅇ리 ㅇㅇ마을			
소유자주소:주민등록번호	<u>5</u> ·			
- 승낙자(소유		(인)		
		년 월	일	
o o시장·군~	수 귀하			

【별지 4호 서식】

귀어인의 집 조성 대상지역 선정결과

[ㅇㅇ군]

□ 귀어인의 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 구입

시군별	마 을 대표자	위치 (주소)	사업량 (개소)	수리 및 구입	면적	(m²)	건물형태	소요 예산 (천원)
	네끄자	(+31)	(71121)	1 н	대지	건물		(천원)

*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

□ 노후 주택 철거

시군별	마 을 대표자	위치 (주소)	사업량	면적	(m²)	소	유주	소요 예산	철거 호	후 계획
기반열	대표자	(주소)	(주소) (개소)	대지	건물	주소	성명	(천원)	신축	이동식 주택

*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

□ 임대 운영

시군별	마 을	위치 (주소)	사업량 (개소)	면적(㎡)		소유주		임대료 지원(월 기준)
	네효사			대지	건물	주소	성명	

*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

【별지 5호 서식】

<u>착(준) 공계</u>

- 1. 사업명
- 2. 시설장소
- 3. 사업기간
 - o 착공일
 - o 준공(예정)일
- 4. 사업내용
- 5. 기타사항(예상문제점, 특이사항 등)

위와 같이 착(준)공되었기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착(준)공계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소 제공자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 귀하

【별지 6호 서식】

[/월]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

1. 사업명:

2. 회계명 :

3. 사업주체:

4. 사업추진내용 :

5. 추진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 부 사업명	년 계 획					집 행 실 적(누계)						
	사업량	국고 보조	융자	지방비	자담	계	사업량	국고 보조	융자	지방비	자담	계

일	정	사업공정	년간진도(%)		부진원인 또는 문제점		
착공일	착공일 준공예정일		(a) 계획 실적		구선된단 또는 문제점		

6. 추진실적

※ 분기별작성(6월, 12월)

연번	시군	사업자명/운영자명	주택규모 (m²)	임대료	임대실적 기간	비고
1	००४	홍길동	51.02	10 만원/월	2018.4.1.~5.31	예시
2	००४	이순신			-	

7. 대책 또는 건의사항

※ 작성요령

- 1.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,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.
- 2.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.
- 3.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.